

# 서울대학교병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윤리지침

제정 2021.10.01

## 1. 제정 목적 및 대상

- 1) 윤리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 2) 종사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으로 산부인과의 난임센터, 시험관아기연구실 등 배아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난임시술의료기관(이하 기관)에 등록된 인력 및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종사자는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 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2. 관련법률, 지침 등의 숙지에 대한 사항

- 1) 종사자는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관계 부처에서 발간되는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들 법률 및 규정, 지침의 최신사항을 검토하여 기관 관리를 위한 운영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과 관련된 최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기관관리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 심의를 준수하고 해당되는 법률 및 지침이 없는 경우 기관위원회 결정을 따라 기관 운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 3.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본 원칙

- 1)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위는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2) 보조생식술, 기타 연구와 관련된 모든 동의권자의 자발적 동의는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근거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 업무(진료) 특성상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 또는 암호화된 파일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사항

- 1) 배아 및 생식세포의 관리 및 시술전반은 생명윤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원칙은 서울대학교병원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한다.
- 2)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금지 사항
  -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단,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신들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 3) 동의서는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종사자는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배아, 난자 및 정자를 취급하여야 한다. 기관은 동의구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침 등에 포함하고 종사자는 이에 대하여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5) 배아, 난자, 정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5. 기관윤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 1) 기관은 진료 및 기관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윤리위원회에 최소 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2) 보고 해야 할 내용은 관련법이 정하는 기관 운영규정, 지침, 동의서 및 설명문 등에 대한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난자제공자 등 생식세포 제공자 시술에 관련된 사항이다.
- 3) 그 외 관련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기관 운영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 관련부처의 지침, 기관 내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기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고하여 기관위원회 심의 및 검토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이하 하위 규정

모자보건법 및 이하 하위 규정

\*유관기관 지침 :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보건복지부 (2016)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 (2021)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